

붙임 1

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

소방위

정 준 용

■ 확인자 :

소방경

김 동 욱

(Handwritten signatures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강서소방서 (개화119안전센터)	산청	2015. 7	GF47910	(주)엠에스엘컴프레서 (2018. 6. 9.)

근거규정 (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, 별표 7. 호흡보호장비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7호 가항 4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6개월마다(21.3.9./청 지침) 새로운 공기로 교체	Ⓢ / 부	
7호 가항 6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Ⓢ / 부	
7호 가항 7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Ⓢ / 부	
8호 가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Ⓢ / 부	
8호 다항. 3)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Ⓢ / 부	
9호 나항 및 다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Ⓢ / 부	
11호 가항 4)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Ⓢ / 부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Ⓢ / 부	

※ 공기호흡기 용기 체크리스트는 본부에서 표본 점검(20개) 후 작성 보관

※ 확인자는 해당 부서의 장(센터장·구조대장 등)

붙임 1

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

소방위

정준용 *정준용*

■ 확인자 :

소방경

김등욱 *김등욱*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강서소방서 (개화119안전센터)	산청	2016. 5	0987KM199	(주)엠에스엘콤프레스 (2018. 6. 9.)

근거규정 (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, 별표 7. 호흡보호장비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고 (사유 등)
7호 가항 4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6개월마다(21.3.9/청 지침)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 / 부	
7호 가항 6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 / 부	
7호 가항 7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 / 부	
8호 가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 / 부	
8호 다항. 3)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 / 부	
9호 나항 및 다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 / 부	
11호 가항 4)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 / 부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 / 부	

※ 공기호흡기 용기 체크리스트는 본부에서 표본 점검(20개) 후 작성 보관
 ※ 확인자는 해당 부서의 장(센터장·구조대장 등)

공기충전기 안전관리 등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소방위 정준용 *정준용*
 ■ 확인자 : 소방경 김동욱 *김동욱*

소방서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관리번호	안전관리자 (자격현황)
강서소방서 개화119안전센터	(주)엠에스엘컴프레서	2018.06.09.		

근거규정 (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, 별표 7. 호흡보호장비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고 (사유 등)
5호 가항 (공기품질 검사)	○ 공기품질검사 연 2회 이상 실시 - '19년 2회, '20년 2회 공인시험기관 검사 현황	(적) / 부	2019. 4. 5 2019. 9. 9 2020. 3.15 2020. 8.31
6호 나항 (검사결과 관리)	○ 공기품질검사 결과 관리 - 사용 중지, 수리 이력, 검사결과 기록	(적) / 부	
7호 가항 1)~2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기 점검대장 기록관리 - 1주일에 30분 이상 가동 여부	(적) / 부	
7호 가항 3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공기충전기 필터 연 2회 이상 교체 - 교체 시기 적정성(공기품질 시료채취 전)	(적) / 부	
9호 다항 2) (고압용기의 파기)	○ 고압용기 파기방법 적정성 - 압착, 절단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 / 부	
9호 다항 3) (공기충전기의 파기)	○ 공기충전기 파기방법 적정성 - 주요부 타격으로 파기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 / 부	
12호 가항 및 나항 (충전실 및 정비실 관리)	○ 충전실 및 정비실 설비 점검 적정성 - 측정장비 검·교정, 정기점검	(적) / 부	
13호 가항 및 나항 (예비용품 관리)	○ 공기호흡기 10 세트 및 소모품 보유 - 공기충전기 관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	(적) / 부	

※ 확인자는 해당 부서의 장(센터장·구조대장 등) / 작성된 체크리스트는 센터·구조대 등 자체 보관
 ※ 충전기 1개당 1개 체크리스트 작성 / 청 표본점검 제출 요청 시 원본 제출